

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하수도
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12 월 3 일

여 수 시 장 권 오 봉



여수시 조례 제1692호

붙임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지정하고자 하는 때에”를 “지정할 수 있는 범위”로, “이내로 하여야”를 “이내로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규칙이 정하는 바”를 “「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하수관거 준설 등)”을 “(하수관로 준설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하수관거의”를 “하수관로의”로, “하수관거상태”를 “하수관로 상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하수관거”를 “하수관로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규칙이 정하는 바”를 “규칙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본문 중 “배수설비 설치의무자”를 “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”로, “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”를 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「건축법」 제18조제1항”을 “「건축법」 제22조제1항”으로, “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”를 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시티브이”를 “폐쇄 회로 텔레비전”으로 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 제목“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”을“(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“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”을“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4호 중“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시 홈페이지 등에”를“범위에서 시 공보, 게시판,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, 시 홈페이지에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가목 중“용도변경”을“용도변경, 폐수배출시설 설치, 변경설치”로,“시 부과하는”을“시 개선액을 통보하고,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“제2항”을“제1항”으로,“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”를“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”로 한다.

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 전부를

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“타행위””를 “타행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원인자부담금의 사용)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, 증설, 이설,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의 「하수도법」(법률 17852호, 2021. 1. 5. 공포)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) 「하수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<u>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(하수관거를 말한다)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2조(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) -- ----- ----- --- <u>지정할 수 있는 범위</u>----- ----- ----- <u>이내로</u>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일시사용 신고)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,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<u>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</u>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일시사용 신고)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--.</p>
<p>제7조(<u>하수관거 준설 등</u>) ① 시장은 <u>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</u> 매년 1회 이상 <u>하수관거상태를 점검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</u>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침수·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</p>	<p>제7조(<u>하수관로 준설 등</u>) ① ----- -- <u>하수관로의</u> ----- ----- <u>하수관로 상태</u>----- --.</p> <p>② <u>하수관로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
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(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
준공검사 등) ① 법 제24조에
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
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
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
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
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4조(배수설비 준공검사) ① 법
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
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
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
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
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
전·중·후의 사진을 첨부하여
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
만, 「건축법」 제18조제1항 및
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
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
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
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
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

-----.

제8조(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
준공검사 등) ① -----

----- 규칙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배수설비 준공검사) ① -
----- 배수설비의
설치의무자-----

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-----

-----.

-- 「건축법」 제22조제1항 --

----- 배수설비 준공검
사 신청서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자에게 연막, 염료, 시시티브이 (CCTV)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15조(배수설비의 유지·관리)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·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제21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·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 <단서 신설>

2.·3. (생략)

4. 오수발생량 1m³/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

----- 폐쇄 회로 텔레비전-----

제15조(배수설비의 유지·관리)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-----

1.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-----

--. 다만,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
2.·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4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5. (생략)

6.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,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가.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, 증축, 개축·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나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22조(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“타공사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의

----- 범위
에서 시 공보, 게시판,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, 시 홈페이지에도 -----
-----.

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
-----.

가. -----

----- 용도변경, 폐수배출 시설 설치, 변경설치 -----
----- 시 개선액을 통보하고, 건축물 등의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----.

나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

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
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
협약하여 산정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
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공사
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에
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
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23조(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
금)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
“타행위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
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
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
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
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
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
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
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
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
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공사비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
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
한다.

<삭 제>

③ ----- 제1항-----
----- 법 제61
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
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-----
-----.

제23조(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
금) ① -----
타행위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
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
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
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

<신 설>

한다.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전
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
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3조의2(원인자부담금의 사용)

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
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,
증설, 이설, 개축 및 개수 등 공
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
수 있다.